

총회 시행세칙

<주: 본 시행세칙은 주후 2013년 4월 9일 제30차 총회에서 개정된 것으로 당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는 세칙임.>

본 시행 세칙은 총회 회칙 제41조에 의거하여 회칙에 미비 된 사항과 한인총회 특수 사정에 입각한 행정규정 및 회칙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장 교역자

제1조 (교역자 인사): 교회의 교역자 인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제1항 (담임목사): 담임목사 인사는 C&MA 교회 헌법 제8조에 준하여 다음 절차를 밟는다.

1. 담임목사 인사는 교회치리회(당회 혹은 목회협력위원회)와 감독이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회치리회가 부재할 경우 감독이 교인총회를 소집하여 처리한다.
2. 담임목사의 인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회치리회는 즉시 감독에게 보고하고, 감독과 협의하여 인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감독은 담임목사 후보자를 단수 혹은 복수로 교회치리회에 제시한다.
4. 교회치리회는 감독이 제시한 담임목사 후보자 중 1인을 종다수 투표로 선정하여, 교인총회에 상정한다. 교인총회 3분의 2 이상의 인준을 받은 후보자는 담임목사로 파송된다.
5. 감독이 제시한 후보자들이 교회에서 채택되지 않았을 경우, 교회는 총회 회원 자격에 하자가 없는 담임목사 후보를 감독에게 제의할 수 있으며, 위 3번 이하의 절차에 따라 파송받는다.
6. 담임목사가 사임을 원할 때에는 적어도 일개월 전 감독에게 사임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7. 담임목사가 목사직을 감당할 수 없는 이유가 발생할 때, 교회치리회와 해당 담임목사는 감독과 협의하여 담임목사의 거취를 결정한다.
8. 감독은 교회의 결정이 불가능하거나, 총회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총회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해당교역자를 임명, 해임, 혹은 전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2항 (부목사): 교회가 부목사, 교육목사 및 기타 전임목사를 청빙할 때는 총회 회원 자격에 하자가 없는 자로, 교회치리회의 인준을 받아 담임목사가 임명하며, 반드시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 (전도사): 교회의 전임전도사는 총회 사역자 자격에 하자가 없는 자로, 교회치리회의 인준을 받아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제2조 (사역증): 총회는 C&MA 교회사역부(NCM)의 규정에 맞추어, 매 년 총회 소속 사역자에게 사역증을 발급한다. 평신도사역자증(Christian Workers' Certificate)은 목사나 전도사가 아닌 평신도로서 교회가 추진하는 특수사역을 담당하는 사역자를 대상으로 발급된다.

제3조 (가입): 총회에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교역자): 총회가입원서, 명함판사진 2매, 교리 설문서, 서명된 신조, 대학 이상 졸업 및 성적 증명서, 이력서, 신앙간증서, 호적등본, 지역회장 또는 담임목사의 추천서, 목사안수증명서(목사일 경우).

제2항 (평신도사역자): 가입원서, 신앙간증서, 이력서, 담임목사 추천서

제4조 (목사고시 및 안수): 목사고시 및 안수를 받으려는 후보자는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가진 자로 인사위원회가 심사하여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항 (목사 고시 응시자격):

1.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석사(M.Div) 학위를 수여받고, 1년 이상 사역한 자로 교단 가입에 하자가 없는 자.
2.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에서 교회 사역에 연관된 학사 학위를 수여받고, 2년 이상 사역한 자로, 교단 가입에 하자가 없는 자.
3. 신학대학원에서 교회 사역에 연관된 석사학위(M.P.S., M.A. 등)를 수여받고 2년 이상 사역한 자로, 교단 가입에 하자가 없는 자.
4. 총회가 제공하는 교역자양성과정(Ministrial Study Program)을 수료하고, 2년 이상 사역한 자로 교단 가입에 하자가 없는 자.

제2항 (청원): 목사고시의 청원은 담임목사가 추천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총회에 청원한다. 단, 사역증을 발급받고 총회 소속이 아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자는 해당 지역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 청원할 수 있다.

제3항 (청원시기) 목사고시의 청원은 고시청원을 인준하는 정기실행위원회 개최 4개월 전까지 총회에 접수되어야 한다.

제4항 (목사고시) 목사고시는 고시안수위원회에서 주관하며,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논문: 다음과 같은 주제의 논문을 고시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원의 주 그리스도, 성결의 주 그리스도, 신유의 주 그리스도, 재림의 왕 그리스도, 선교의 성서적 근거, 지교회 전도에 대한 성서적 근거, 교회론)
2. 독후감: 고시안수위원회가 지정한 책들에 대한 독후감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필기시험: 필기시험은 매년 총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자 연장교육 기간에 실시하며, 과목은 성경, 교단 역사와 정치, 교회사, 조직신학으로 한다.
4. 설교 실기 및 면접: 필기시험 기간 중 고시안수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설교의 실기시험과 면접 심사를 실시한다.

제5항 (고시비): 각 고시후보자는 실행위원회가 정하는 고시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항 (안수): 목사고시 합격자는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후, 해당 지역회 주관으로 안수를 받는다.

제5조 (이명된 교역자): 타 교단에서 전입되어 오는 교역자는 본 교단의 역사와 교단정치에 관하여 총회가 정하는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제6조 (연장교육): 총회에 소속된 모든 교역자는 총회 혹은 지역회에서 주관하는 교역자연장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 2 장 지역회

제7조 (조직): 지역회는 회칙에 규정된 특정지역에 근접한 5개 이상의 교회로 조직한다. 새로운 지역회를 창설 혹은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총회에서 발의하여 총회에서 출석인원 3분의 2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8조 (명칭): 각 지역회는 C&MA 한인총회 _____ 지역회라 칭한다.

제9조 (목적): 지역회의 목적은 감독과 실행위원회의 결정에 순종하여, 지역회 내 교회의 발전과 연합, 교역자의 친목을 도모하며, 총회의 사역을 수행하는 것이다.

제10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총회 회칙 제1장 제6조에 준한다.

제11조 (지역회의 업무)

1. 지역회 임원 및 지역 대표 실행위원 선출.
2. 회칙 및 세칙 개정안 발의 및 안건 상정.
3. 지역 내 개척과 선교 관계 업무 및 지역회에 위임된 총회 업무 수행.
4. 회원 간의 연합과 친목 도모 및 연합 사역주관.
5. 교회 장로의 시취와 장립 주관 및 이명 장로의 교육, 지역회 내 장로 명단 관리.
6. 감독의 지시에 따라 지역회 내 교회의 치리에 협조.

제12조 (지역총회)

제1항 (구성): 지역총회는 지역 내에서 사역하는 모든 정회원 및 준회원 교역자와 각 교회 평신도 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

제2항 (개회): 지역총회는 접수된 회원 및 교회대표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3항 (정기지역총회): 정기지역총회는 매년 2월 중에 회집한다.

제4항 (임시지역총회): 필요가 있을 때 회장이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시지역총회를 소집한다. 임시지역총회는 통보된 안건만을 심의한다.

제13조 (월례회): 지역회는 매 달 월례회로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 간의 친목 도모 외에 필요한 안건들을 처리한다.

제14조 (임원회): 지역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및 부서기와 부회계로 구성하며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

제1항 (지역회장): 지역회장은 지역회를 대표하며, 지역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매 3개월마다 지역상황을 감독에게 보고한다.

제2항 (부회장): 지역회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항 (서기): 서기는 지역회 모든 회의의 작성하며, 문서수발 및 보관 업무를 관장한다.
- 제4항 (회계): 회계는 지역회의 제반 재정업무를 관장한다.
- 제5항 (부서기 및 부회계): 필요에 따라 부서기와 부회계를 둘 수 있다.
- 제15조 (부서): 지역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며 아래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제1항 (고서부): 장로 교육 및 시취 업무를 관장한다.
- 제2항 (선교부): 지역회 선교 및 전도 업무를 수행한다.
- 제3항 (교육부): 지역회 교역자수련회 및 연합사역을 수행한다.
- 제4항 (기타): 지역총회의 결의에 의해 추가로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 제16조 (감사): 지역회는 매 회기 1인의 감사를 선출한다.
- 제17조 (선거): 지역회의 모든 선거는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1차, 2차 투표에서 소정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3차 투표를 실시하여 종다수 득표로 선출한다.
- 제1항: 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 제2항: 기타 임원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의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 제18조 (임기) 임원 및 부서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9조 (보선): 모든 임원의 보궐선거는 임원회가 관장한다. 단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 제20조 (정족수): 지역회의 모든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으로 개최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1조 (회계년도): 지역회의 회계년도는 2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로 한다.
- 제22조 (재원): 지역회의 재원은 각 교회의 회비와 기부금 및 연합사역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지역회에 속한 모든 교회는 매 회기마다 세례교인 당 년 \$5의 지역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지교회

- 제23조 (명칭): 한인총회 소속교회는 C&MA 한인총회 _____ 교회라 칭한다.
- 제24조 (정교인 자격): 정교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제1항 (중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과 중생의 확신이 있는 자.
- 제2항 (믿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성경의 축자영감을 믿는 자.
- 제3항 (사중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 성결의 주, 신유의 주, 재림의 왕으로 고백하는 자.
- 제4항 (교회사역 협조): 총회 및 소속 교회의 목적과 방침에 전적으로 찬동하며, 교회 및 총회의 모든 사역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자.
- 제5항 (등록): 상기 1항 내지 4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세례를 받고 정교인으로 등록된 자.
- 제6항 (자격상실): 정당한 사유나 담임목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6개월 이상 주일예배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정교인 자격을 상실한다. 또한 교역자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교회 공동체에 해악을 끼친다고 판단되는 자는, 교회치리회가 2/3 이상의 찬성으로 정교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제25조 (성례): 세례와 성만찬은 교회가 실시하는 두 가지 성례이다. 세례는 침례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약례도 가하다. 성례는 안수받은 목사가 주관하며, 정기적으로 행한다.
- 제26조 (교인총회): 교인총회는 교회 정교인 전체가 모이는 회의이다.
- 제1항 (구성): 교회의 정교인으로 구성한다.
- 제2항 (임원): 의장과 서기는 당회 또는 목회협력위원회의 의장과 서기로 한다.
- 제3항 (임무): 교인총회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교회의 전반적인 사역 보고와 재정결산 보고를 받고, 차기 예산안을 채택한다.
 2. 장로, 목회협력위원 및 기타 교회의 중직을 선출한다.
 3. 당회나 목회협력위원회가 이첩한 교회의 중요 안건을 심의한다.
- 제4항 (소집): 교인총회는 당회 또는 목회협력위원회의 결의로 당회장 또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일시, 장소, 안건은 일주일 전에 공고하고 출석회원으로 개최한다.
- 제27조 (치리회): 교회는 교인총회 과반수의 결의로 아래와 같은 치리회를 선택할 수 있다.
- 제1항 (당회)
1. (구성): 담임목사와 2인 이상의 시무장로로 구성한다.

2. (임원): 당회장은 담임 목사가 되며 서기와 재무는 당회에서 호선한다.
3. (임기): 당회장 이외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 (시무년한): 시무장로는 매 3년마다 1년 휴무한 후 정기교인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득표로 재시무할 수 있다.

제2항 (목회협력위원회) : 목회협력위원회는 교회의 치리에 있어서 당회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다.

1. (구성): 담임목사와 3인 이상 7인 이하의 제직원으로 구성한다.
2. (선임): 목회협력위원은 정기교인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3. (임원): 목회협력위원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서기와 재무는 목회협력위원회에서 호선한다.
4. (임기): 담임목사 외 목회협력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교인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5. (명칭): 목회협력위원회는 각 교회의 사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같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3항 (임시치리회): 개척교회, 혹은 특수한 사정으로 당회나 목회협력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담임목사가 지역회장과 협의하여 당회 및 운영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28조 (치리회의 기능)

1. 교회 전반의 업무에 대한 입안 및 감독
2. 재정 결산 업무와 예산안 입안
3. 교역자 및 직원의 인사
4. 장로, 권사 및 안수집사 후보의 추천
5. 교회의 모든 재산 및 문서 관리.
6. 교인의 포상 및 징계.
7. 상회와의 제반 협동 사역

제29조 (제작회)

제1항(구성): 제작회는 담임목사, 원로목사, 은퇴목사, 부목사, 기타 전임목사, 담임목사 사모, 전임전도사, 장로, 원로장로, 은퇴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및 모든 협동 직분자로 구성하며 담임목사가 의장이 된다.

제2항 (기능): 제작회는 교인총회가 세운 예산을 교회치리회의 감독 하에 집행하며, 담임목사를 도와 교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시행하고, 현금 및 재정을 관리하고 이를 담임목사와 교회치리회에 수시로 보고한다.

제3항 (임원 및 부서): 제작회 의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서기, 회계, 선교회계를 두며 기타 필요한 임원 및 부서는 교회치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30조 (담임목사):

제1항 (위치): 담임목사는 교회를 대표하며 교회치리회와 제작회의 의장이 된다.

제2항 (업무): 담임목사는 교회의 모든 운영, 즉 예배와 교육, 기타 사역, 인사 및 행정과 재정 관계 제반 업무를 교회치리회와 상의하여 지휘 감독한다. 교회의 모든 재정 업무와 행정 처리는 담임목사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제3항 (생활비): 교회는 담임목사의 사택비와 생활비를 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항 (휴가 및 안식년): 교회치리회는 담임교역자의 영육 간의 재충전을 위해 매 해 2주 이상의 휴가를 배려하며, 또한 담임목사와 상의하여 안식년, 혹은 안식월을 고려하도록 한다.

제5항 (유고): 담임목사의 유고시에는 교회 치리회는 즉시 총회 감독에게 보고하고, 지역회장과 상의하여 임시당회장을 파송 받는다. 감독은 유사시에 담임목사의 기능을 행사할 수 있다.

제31조 (부목사, 교육목사, 사역목사) : 부목사, 교육목사 외 모든 사역을 담당하는 목사는 교회의 임시직으로 담임목사의 지시에 따라 교회 사역을 보좌한다.

제32조 (장로): 장로는 영적지도자의 위치에서 교회를 섬기며, 담임목사를 도와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는 직분이다.

제1항 (자격): 장로는 35세 이상의 남자로서, 중생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에 충성하며, 가정이 원만하며, 그 인격이 교회의 모범이 되는 자라야 한다. 장로후보는 세례받은 후 5년 이상 경과된 자라야 하며, 3년 이상 본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연속 봉직한 자로 한다.

제2항 (선임): 장로는 교회치리회의 추천을 받아 교인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피택된다.

제3항 (시취): 피택된 장로후보에 대해 담임목사는 서면으로 해당 지역회에 시취를 청원한다. 피택된 장로후보는 지역회가 주관하는 장로 시취 절차와 안수례를 받고 장로로 장립된다.

제4항 (과목): 장로시취 과목은 성경, 교단 역사와 헌법, 장로학, 면접으로 한다.

제5항 (정년): 장로는 70세까지 시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70세 이전의 정년은 교회의 내규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항 (협동장로): 타 교회에서 전입한 장로는 정교인이 된 후, 교회치리회의 임명을 받아 협동장로로 봉사할 수 있다. 적어도 1년 이상 교회를 섬긴 협동장로는, 교회치리회의 추천을 받아 교인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무장로가 될 수 있다. 타 교단에서 전입한 장로가 시무장로가 되려면 반드시 지역회의 교육과정을 밟아야 한다.

제7항 (원로장로): 은퇴한 장로 중, 10년 이상 시무장로로 근속하거나, 시무 중 교회에 끼친 공로가 인정되는 장로는, 교회치리회의 추천과 교인총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원로장로로 추대될 수 있다. 원로장로는 치리회의 초청을 받는 경우 치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3조 (기타 직분):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다음과 같이 직분자를 세울 수 있다.

제1항 (권사):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아 영적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담임목사를 도와 심방, 구제 및 낙심자를 위로하고 권면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는 항존직이다. 권사는 40세 이상의 신실한 여자로서 3년 이상 교회의 제직으로 봉사한 후, 교회치리회의 추천을 받아 교인총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선출된 후 교회가 정하는 교육과 시취 및 임직 절차를 거쳐 권사의 직분을 받는다.

제2항 (안수집사): 안수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아 교회를 섬기며, 전도와 구제에 힘쓰고, 교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항존직이다. 안수집사는 3년 이상 서리집사로 봉사한 신실한 남자로서, 교회치리회의 추천을 받아 교인총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선출된 후 교회가 정하는 교육과 시취 및 임직 절차를 거쳐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는다.

제3항 (서리집사): 서리집사는 제직회원으로 교회를 섬기며, 전도와 구제에 힘쓰고, 치리회의 지시를 받아 교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서리집사는 성실한 정교인 중 담임목사가 교회치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소정의 교육을 받고 직분을 받는다. 서리집사의 임기는 1년으로, 매년 재임명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항 (협동직분): 타 교회에서 전입한 직분자에 대하여 담임목사가 선별하여 교회치리회의 동의를 얻은 후 협동직분에 임명할 수 있다. 이명한 직분자는 적어도 1년 이상 교회를 섬긴 후에, 교회 치리회의 추천을 받아 교인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무할 수 있다. 타교단에서 받은 남자 권사직은 안수집사직과 동등한 직분으로 인정한다.

제5항 (명예직분): 목사 외 모든 시무 직분에 대하여, 규정된 자격에 미흡하나 교회에 충성되고 인격적으로 교회에 덕을 끼치는 자에 대하여 담임목사는 교회치리회의 동의를 얻은 후 명예직을 수여할 수 있다. 명예직분자는 해당 직분의 시무와는 관계가 없다.

제34조 (교회조직절차): 교회 정교인이 20인 이상 되었을 때, 감독은 교회치리회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 교회를 조직한다.

제1항 (광고): 적어도 조직 2주 전에 교회 조직의 목적, 절차 및 일시와 장소를 회중에게 알린다.

제2항 (회원명부): 담임교역자는 20명 이상의 정교인 명단을 감독에게 제출한다.

제3항 (서약): 감독이 의장이 되어 교인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서약을 받는다.

1. C&MA의 신조와 정신에 따라 복음사역에 정진하며, 교단 헌법과 총회 회칙 및 세칙, 감독의 치리에 순종한다.
2. 매년 한인총회에 대의원을 파송하고, 교단 General Council 에 힘껏 참석한다.
3. 총회 선교국과 협의하여 매년 선교대회를 개최하여 선교에 헌신을 재다짐한다.
4. 세계선교를 위한 교단의 선교사역과 대사명기금(Great Commission Fund)에 최선을 다해 동참한다.
5. 한인총회의 운영을 분담하며, 지정된 상회비와 개척선교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한다.
6. 한인총회에서 정한 교역자 은퇴연금에 동참하며 교단 우호기금(Fellowship Fund)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7. 총회 차원의 연합사역에 힘껏 동참한다.

제35조 (선교대회): 교회는 매년 총회 선교국과 협의하여 선교대회를 실시하여 선교정신을 고취하고, 선교헌금을 약정한다.

제36조 (선교주일): 교회는 매년 교단본부가 정하는 선교주일에 특별선교헌금을 하여 대사명기금으로 보낸다.

제37조 (연례보고) 교회는 매년말 교회의 교세와 재정을 교단과 한인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 (상회비와 개척선교비) 회계는 총회 회칙에 지정된 상회비와 개척선교비를 매월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한다.

제39조 (문서 관리) 교회는 법적 명료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문서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당회(운영위원회) 회의록
2. 교인총회 회의록
3. 제직회 회의록
4. 재정관계 문서
5. 재산명세서
6. 교적부 및 정교인 명부
7. 주보철
8. 혼인 및 예식 기록부

제40조 (교회의 재산) 교회의 부동산을 매입, 매각, 양도, 교환, 저당, 담보할 경우에, 교회치리회는 반드시 사전에 총회 감독과 상의하여야 한다.

제41조 (재산귀속) 교회가 해체되거나, 총회 실행위원회의 인준 없이 총회를 무단 탈퇴하였을 경우, 교회의 재산은 총회 실행위원회가 관리한다. 재산귀속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단 지교회 균일헌법 제15조에 따른다.

제42조 (부칙)

1. 본 세칙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지 교회는 본 시행세칙과 상충되지 않는 내규를 둘 수 있다.
3. 본 세칙은 한인총회 운영에 있어서 우선하며, 본 세칙에 미비된 사항에 한하여 C&MA 교단 헌법과 만국통상회의 법을 준용한다.

주: 본 시행세칙은 주후 2011년 4월 26일 제28차 총회에서 개정된 것으로 당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는 세칙임.